



“시민이 행복하고,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”

서울에너지공사

받는곳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 보고

1. 관련근거 :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-275(2017.2.16.)호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-372(2017.2.20.)호

2. 위와 관련하여 「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36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분할의 사유로 서울특별시의 배출권거래제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서울에너지공사에 승계되어,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으며, 법 제16조, 시행령 제3조 및 20조에 따라 ‘17년 배출권 추가할당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- 붙 임 1 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보고 1부
 2 : 환경부 권리의무승계 통보서 1부
 3 : 산업통상자원부 17년 추가할당 통보서 1부. 끝.

과장	유호연	효율화사업부장	한승호	효율사업처장	김희동	사장	02/24 박진섭
협조자							
예산 확인		()	계약	()	감사		
시행	효율화사업부-123	(2017.02.24.)	접수	()
우 07978	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(목동900)	서울에너지공사	/ http://www.massenergy.co.kr				
전화 2640-5332	/전송	/ yhy@i-se.co.kr		/ 공개			